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과제 ‘행정수도 세종 완성’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2028년 1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 및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1명(4급 1명)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4명(5급 2명, 6급 2명)은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정원으로 증원한 인력 4명(5급 2명, 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28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28일까지로 연장하면서 신설되는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 정원으로 통합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디지털 중심 홍보 전환 및 업무량 확대를 고려하여 디지털 홍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정원으로 증원한 인력 1명(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6일까지에서 2027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하부조직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00. ~ 00.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디지털홍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12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2026년 2월 26일”을 “2027년 3월 31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 및 정원) ①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장은 시설사업국장이 겸임한다.

②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에 대통령집무실과를 두며, 대통령집무실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대통령집무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관계기관 협의
2.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관리
3. 대통령세종집무실 및 관저 등의 건축 계획·설계·시공 등 시행 관리
4. 대통령세종집무실 지원시설 등의 건축 계획·설계·시공 등 시행 관리
5. 경호 및 보안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계획 수립
6. 부지조성, 기반시설(조경, 기계, 전기, 통신 포함) 관련 계획 수립 및 시행
7.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사항의 검토 및 협의
8.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지역 인근에 입지하는 시설 간 연계를 위한 통

합계획 설계공모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9.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지역 인근조성 사업의 기본방향·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10. 국회세종의사당 등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지역 인근에 입지하는 시설의 건립지원
11. 대통령세종집무실 기록화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12. 대통령세종집무실 및 인근에 입지하는 시설의 건립 관련 대외협력 및 소통에 관한 사항

④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4와 같다.
별표 1 중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9”를 “8”로, 행정주사·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7”을 “18”로 한다.

별표 2 중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9”를 “8”로, 행정주사·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7”을 “18”로 한다.

별표 3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에 제6호 중 “2026년 2월 26일”을 “2027년 3월 31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4의 정원 1명(4급 1명)은 2028년 12월 28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2월 29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 및 별표 2의 정원 중 1명(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명)으로 본다.

[별표 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13조 관련)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존속기한: 2028년 12월 28일)

총계	7
일반직 계	7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방호사무관	3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방호주사	2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 또는 방호주사보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시설사업국) ① ~ ⑤ (생 략)	제7조(시설사업국)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공공청사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u>국회세종의사당의 종합계획 수립 지원</u>	<u><삭 제></u>
8. <u>국회세종의사당 건립사업의 공정관리 지원 및 예산관리</u>	<u><삭 제></u>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공무원의 정원) ① · ② (생 략)	제10조(공무원의 정원) ① · ② (현행 과 같음)
<u><신 설></u>	<u>③ 디지털홍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u>
제12조(한시정원) ① ~ ④ (생 략)	제12조(한시정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28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둔다.</u>	<u><삭 제></u>

⑥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2026년 2월 26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둔다.

<신 설>

⑥ -----

----- 2027
년 3월 31일-----

-.

제13조(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 및 정원) ①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장은 시설사업국장이 겸임한다.
②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에 대통령집무실과를 두며, 대통령집무실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대통령집무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관계기관 협의
2.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관리
3. 대통령세종집무실 및 관저 등의 건축 계획·설계·시공 등 시행 관리
4. 대통령세종집무실 지원시설 등의 건축 계획·설계·시공 등 시행 관리
5. 경호 및 보안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계획 수립

6. 부지조성, 기반시설(조경, 기계, 전기, 통신 포함) 관련 계획 수립 및 시행
7.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사항의 검토 및 협의
8.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지역 인근에 입지하는 시설 간 연계를 위한 통합계획 설계공모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9.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지역 인근조성 사업의 기본방향·추진 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10. 국회세종의사당 등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지역 인근에 입지하는 시설의 건립지원
11. 대통령세종집무실 기록화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12. 대통령세종집무실 및 인근에 입지하는 시설의 건립 관련 대외 협력 및 소통에 관한 사항
- ④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4와 같다.

< 신·구정원 대비표 >

[별표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본문 관련)

현 행		개정안		비 고
· 서 기 관 · 과 학 기 술 서 기 관 · 행 정 사 무 관 또 는 시 설 사 무 관	9	· 서 기관 · 과학기술서관 ·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 사무관	8	· △1
· 행 정 주 사 · 공 업 주 사 또는 시설주사	17	· 행 정 주 사 · 공 업 주 사 또는 시설주사	18	· +1
·		·		·

[별표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단서 관련)

현 행	개정안	비 고

[별표 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한시정원표(제12조)

현행	개정안
5. 제12조제5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 <u>2026년 12월 28일</u>) 총계 4 일반직 계 4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방호사무관 2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방호주사 2	<u><삭제></u>
6. 제12조제6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 <u>2026년 2월 26일</u>)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1	6. 제12조제6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 <u>2027년 3월 31일</u>)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1